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

공공공사의 입찰제도 중 턴키 입찰방식의 개선 방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

2009. 10

국회의원 강창일
(민주당 제주시 갑, 국토해양위원회)

발간사

우리나라에 턴키 입찰제도의 연원을 살펴보면 ‘중동 건설붐’ 이 불었던 70년대까지 소급됩니다. 중동 건설시장 호황으로 해외로 진출했던 건설업체들이 해외의 신기술을 접하면서, 턴키 입찰 방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75년 최초로 턴키 입찰을 위한 특례규정이 제정되었고, 2009년 현재 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와 300억 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한해 턴키 입찰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턴키 입찰방식은 사업비와 사업기간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면에서 장점을 가지는 반면, 사업관리의 한계, 품질 확보의 한계, 입찰부담의 증가 면에서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턴키 입찰제도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졌듯이 대형업체 중심으로 대규모의 로비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입찰방법 선정의 객관성 결여, 낙찰률에 기준한 비효율성 논란 등 최근 들어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확보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별척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사실상 방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구매촉진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온 공공기관 또한 많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문제가 사실은 주무기관인 중소기업청을 대상기관으로 삼고 있는 지식경제위원회의 담당영역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시장의 약 20%를 점유하는 국토해양부와 산하 기관들의 법준수의지 또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토해양위 위원이기는 하지만 전향적으로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정책자료집이 생산적인 국회만들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바람직한 국회상 정립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생산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국회입법조사처 김상욱 입법조사관과 박충렬 입법조사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목차

공공공사의 입찰제도 중 턴키 입찰방식의 개선 방안

요약	7
1. 턴키 입찰제도의 국내 도입 배경 및 연혁	9
1) 우리나라 턴키 입찰제도의 도입배경	9
2) 우리나라 턴키 입찰제도의 개정 연혁	9
3) 해외의 턴키 입찰제도와외의 개념 비교	10
2. 턴키 입찰제도의 장점 및 단점	13
3. 우리나라의 입찰제도별 수주추이 및 낙찰률의 비교	14
1) 우리나라의 입찰제도 요약	14
2) 입낙찰제도의 수주추이 및 낙찰률의 변화	15
4. 우리나라 턴키 입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별첨1] 국토해양부 질의회답자료	21
[별첨2] 2004~2008 입찰방법별 현황	23
[별첨3] 2005~2008 공공 공사중 턴키대안공사 비중	24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요약	27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요	29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	30
1)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31
2) 공공구매의 이행력 제고	36
3.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40
4. 중소기업의 친환경제품 구매 확대 방안	44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	45
[별첨1] 국토해양부 관련 기관 중소기업 구매실적 및 계획	49

공공공사의 입찰제도 중 턴키 입찰방식의 개선 방안

요 약

■ 조사·분석 방향

- 턴키 입찰제도의 국내 도입 근거 및 연혁
- 해외의 턴키 입찰제도와 국내 제도의 비교
- 턴키 입찰제도의 장점 및 단점
- 우리나라의 입찰제도별 수주추이 및 낙찰률의 비교
- 우리나라 턴키 입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질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보고서 및 해당기관을 통해 조사하여 회신

■ 주요내용

- 턴키 입찰제도의 국내 도입 근거 및 연혁
 - 턴키 입찰제도는 건설공사에 관한 모든 서비스(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시운전 등의 과정)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방식의 입찰제도임
 - 우리나라는 턴키 입찰제도의 개념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서 정의함
 - '70년대 중동의 건설시장 호황으로 해외로 진출한 건설업체들이 해외의 신기술을 접하면서, 턴키 입찰 방식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턴키 입찰을 위한 법령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75년 최초로 턴키 입찰을 위한 특례규정이 제정되었으며, 2009년 현재 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및 300억 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한해 턴키 입찰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턴키 입찰제도의 낙찰자 선정에 관한 개정은 현재까지 7회에 걸쳐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본문의 <표 1>에 요약하였음
- 해외의 턴키 입찰제도와 비교
 - 일본은 턴키 입찰 비율이 매우 적어 주로 미국의 턴키 입찰제도와 비교함
 - 우리나라의 턴키 입찰제도는 절차와 방법에 중점을 둔 계약측면이 강한 제도임에 반해 미국의 턴키 입찰제도는 시공의 책임에 중점을 둔 제도임

○ 턴키 입찰제도의 장점 및 단점

- 턴키 입찰제도의 수많은 장점과 단점을 발주자 측면과 턴키 사업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 본문의 <표 3> 및 <표 4>에 나타내었음
-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절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라 할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사업관리의 한계, 품질 확보의 한계, 입찰 부담의 증가 등임

○ 우리나라의 입찰제도별 수주추이 및 낙찰률의 비교

- 우리나라의 입찰제도는 적격심사, 최저가낙찰제, 턴키 입찰로 불리는 일괄·대안입찰 방식의 3가지 입찰방식이 사용되고 있음
- 3가지 입찰방식에 따른 수주추이(2001년~2007년 상반기) 및 낙찰률(1998년~2006 중반기)까지 조사하여 본문의 <그림 1>에 나타내었음
- 입낙찰제도의 유형별 수주 추이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에 따라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일괄대안입찰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으나 2006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저가낙찰제의 도입 이후 낙찰률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2003년 12월 저가심의제를 도입하였으나, 큰 성과가 없이 2004년까지 낙찰률 감소추세가 이어져 2006년 5월 저가심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관적 심사제가 도입되어 다소 안정적인 수준을 보임(2007년 상반기 최저가공사 평균낙찰률은 68.3%)

○ 우리나라 턴키 입찰제도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턴키 입찰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입찰방법 선정의 객관성 결여, 기본설계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 과다한 설계도서 작성으로 인한 입찰비용 부담 증가, 대형업체 중심의 과점현상 심화, 낙찰률에 기준한 비효율성 논란 등임

○ 우리나라 턴키 입찰제도의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턴키 입찰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단기 방안: 턴키 발주 관련 정책방향의 일관성 유지,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제도 도입, 설계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입낙찰제도의 다양화 등

*단기 대책 중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턴키 입찰제도의 심의의 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의 인력 풀(Pool)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발주하는 턴키 입찰을 심사하는 70여명의 평가단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가 발주하는 입찰을 심사하는 50여명의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함

- 중장기 방안: 기본시각의 재정립, 대상공사 선정기준의 재정비, 발주자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정부예산 및 계약제도의 개편, 지속적인 성과평가의 제도 등

1. 턴키 입찰제도의 국내 도입 배경 및 연혁

1) 우리나라 턴키 입찰제도의 개요

- 턴키 입찰제도는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 특별한 계약으로 턴키입찰 공사의 도급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방식의 입찰제도임
 - 즉, 도급자가 공사의 재정마련, 토지구매, 설계, 시공, 시운전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물이 완전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는 턴키 입찰제도의 개념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 우리나라의 턴키 입찰제도는 턴키 사업자가 설계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로서 계약측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윤미정, 2002)¹⁾

2) 우리나라 턴키 입찰제도의 도입 배경²⁾

- 1970년대 유가폭등으로 인한 중동국가의 건설시장 호황으로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건설 신기술을 경험하였는데, 이때 국제적 계약방식의 하나였던 턴키 입찰제도를 처음 접하게 됨
 - 국내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형공사나 기술집약적 공사에는 턴키 입찰을 할 수 있는 법령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1970년 4월 7일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을 제정
 - 1977년 국내 최초로 ‘삼일항 석유 화학 항만공사’가 턴키 입찰제도를 통해 발주되었고, 이후 주로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등의 플랜트 부문을 중심으로 턴키 입찰제도가 시행됨
 - 이후 사회간접시설인 도로, 철도, 지하철 등의 시설 부문에 턴키 입찰제도가 확대되어 사용되었음

1) 윤미정, 2002, 턴키공사 책임범위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김성일, 1999, “우리나라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의 변화과정” 건설경제 통권 23권 및 건설교통부, 2000, 제2차 건설기술 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내용을 요약함

- 특히 공공공사의 프로젝트가 복잡해짐에 따라 시공자의 공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설계단계에 통합될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공공사에서도 턴키 입찰제도가 확대되었음

3) 우리나라 턴키 입찰제도의 개정 연혁

○ 턴키 입찰제도의 대상 공사의 개정 연혁

- '75년 4월 특례규정 제정시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이고 50억 이상인 공사
- '78년 12월 1차 개정시 공사기간은 삭제하고 금액은 동일하도록 개정
- '80년 11월 2차 개정시 복합공종공사로 총공사비가 30억 이상인 공사와 복합공종공사로서 총공사비가 30억 미만의 공사중 발주자의 장이 턴키계약으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개정
- 현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인 경우와 300억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로 규정되어 있음

- 턴키 입찰제도에서 낙찰자의 선정은 기술개발과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표 1>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보완·개정되었음

4) 해외의 턴키 입찰제도와의 개념 비교

-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미국 CM협회(The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등에서는 턴키 입찰제도에 해당하는 Design Build Contract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A method of project delivery in which the owner contracts directly with a single entity which is responsible for both design and construction services for a construction project."³⁾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및 시공 양자에 모두 책임이 있는 단일 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 또한 턴키 입찰제도는 미국의 토목학회의 '턴키방식 건설계약에 관한 지침서⁴⁾' 에 따르면 시설 가동시점까지 소요되는 시설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고 정의되어 있음⁵⁾

3) 박준기, 2001, 신건설계약론.

4) Greenfield, S. S.,1982, "Turnkey Construction in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Construction Division, ASCE, Vol. 108, No. 2, pp. 202.

〈표 1〉 턴키 입찰제도의 낙찰자 선정방법의 개정 연혁

구 분	내 용
1975.4~1977.3 (1기)	예정가격의 85%이상 입찰자를 낙차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낙찰적격 입찰금을 평균한 금액 이하로 가장 근접한 적격 입찰금액 입찰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 가운데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1977.4~1983.3 (2기)	총공사 금액이 최저 가격인 입찰로부터 순차로 5개 입찰을 선정,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 중에서 총공사 금액이 최저가격인 설계적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1983.4~1992.4 (3기)	기본 설계에 의한 입찰 금액을 설계 점수로 나누어 그 수치가 가장 작은 순으로 5인 이하의 입찰자를 실시설계 입찰 적격자로 선정한 후, 다시 실시설계 입찰을 통해 입찰금액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그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1992.5~1998.8 (4기)	기본설계 입찰 후 입찰금액을 기본설계의 점수로 나누어 당해 수치가 가장 낮은 자만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며, 이후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고 최종심의를 거쳐 낙찰자로 선정함
1995.8~1998.8 (5기)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한 후 기본설계점수와 당해 공사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최고득점 입찰자 1인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토록 한 후, 심의를 거쳐 제출된 실시설계서가 적격하다고 판정될 경우 이를 낙찰자로 선정함
1998.9~2007.10 (6기)	기본설계의 심의후 설계점수 순으로 4개 업체를 선정 적격심사기준을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고 실시설계 심의결과 적격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함
2007.10~현재 (7기)	기본설계에 있어서 입찰자 중에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을 선정한 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고, 실시설계 심의결과 가장 적격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 우리나라의 턴키 입찰제도는 제도의 절차와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미국은 시공의 책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미국과 한국의 턴키 입찰제도의 차이는 〈표 2〉에 나타내었음
 - 일본의 경우 턴키 입찰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함

5) 김성일, 1999, “우리나라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의 변화과정” 건설경제 통권 23권.

〈표 2〉 한국과 미국의 턴키 입찰제도의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턴키 발주의 기본 목적	- 공사비 사전확정으로 예산절감 설계 및 시공 연계를 통한 설계기술 발전	- 공기 단축이 가장 기본적이고, 그밖에 공사비 확정 및 공사비 절감 등의 목적도 추구
대상공사	- 대형, 신규복합공종공사부터 턴키 활성화 -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할 공사	- 발주기관에서 주관적으로 판단 - 단순구조물에서 대형, 복합공종공사로 확대
공사비	- 장기계속계약하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도중에 계속비로 전환	- 총액편성정책에 따라 우리의 계속비와 같은 형태로 편성
턴키사업자 구성방식	- 설계자와 건설업자간 분담 이행방식의 공동도급 - 건축공사의 경우 정부규제로 설계, 시공능력을 모두 갖춘 연합의 존재가 어려움	- 설계자와 건설업자간 구성이 가장 일반적임
턴키공사 입찰, 계약기관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턴키공사는 모두 조달청에서 대행 - 정부투자기관은 회계예규내에서 자체 발주	- 각 발주청에서 독자적으로 입찰계약을 체결함
입찰, 계약 절차	- 단일의 입찰, 계약절차	- 1단계 또는 2단계 절차 이용 - 자격 중심 등 다양한 편입
낙찰자 선정기준	- 단일의 적격심사 낙찰제	- 최저가, 자격심사 및 가격/자격심사 등을 혼용함 - 최고가치제도 이용
협상을 통한 계약체결	- 불허함	- 절반가량(45%) 협상을 통한 계약 체결
입찰, 계약의 시점	- 실시설계 적격심의 후 계약	- 73%의 공사가 설계진도 25%이하에서 입찰, 계약함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원칙적으로 불허함

※자료 : 조달청, 2003, 시설공사계약관리반 교재

2. 턴키 입찰제도의 장점 및 단점

- 턴키 입찰제도는 책임관계의 명확성과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절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관리의 한계, 품질 확보의 한계, 입찰부담 등의 단점이 있음
- 이와 같은 턴키 입찰제도의 장단점을 관련자료⁶⁾를 참조하여 발주자와 턴키 사업자의 입장에서 요약하여 <표 3>과 <표 4>에 나타내었음

<표 3> 턴키 입찰제도의 장점

발주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및 시공을 단일주체와 계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과 재설계 기간이 생략되어 전체 설계 시공 기간이 상당부분 절약됨 - 조정 및 관리가 최소화 될 수 있어 발주자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이점이 됨 - 관리체계 일원화 가능 ● 설계와 시공의 모든 문제를 단일주체가 일괄책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중 변경사항 발생시 책임소재가 분명 - 클레임 발생을 최소화시킴 ● 설계단계의 시공지식 투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 착수가 가능하여 공기가 단축됨 - 공기단축으로 인해 전체 공사비가 절감됨 - 경험의 투입과 커뮤니케이션의 증진으로 비용 절감 가능 - 단계별 시공의 적용이 가능해짐 ● 전문가 참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및 설계단계에 시공전문가의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짐 ● 최적 대안의 선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단계의 경쟁을 통해 합리적 시공 및 다양한 대안의 유도가 가능
턴키사업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기술을 설계에 직접 적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공사비 절약 및 공기 단축의 이점을 발주자와 함께 취할 수 있음 - 이윤추구가 가능하여 신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의욕이 증대됨 ● 위험 관리의 능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수와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됨 - 가격, 공기, 품질관리를 위한 명확한 방안 마련 ● 전문화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폭 넓은 공사기술 축적 - 경험과 실적위주의 공사 발주로 업체의 전문화 촉진이 가능

6) 건설교통부, 2000, 턴키·대안입찰제도 업무요령.

〈표 4〉 턴키 입찰제도의 단점

발주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턴키 사업자에게 책임이 많이 부여되어, 발주자의 사업관리 영역이 그 만큼 축소됨 - 초기에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 설계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움 - 최종결과가 발주자의 기대에 충족하지 않을 수 있음 ● 품질 확보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 계약의 경우 턴키사업자는 이윤증가를 위해 총사업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설계가 시공편의 위주로 수행될 가능성이 있음 ● 공사비용의 불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찰자의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전체 공사비용을 초기에 확정하기 어려움 - 발주자는 예비비의 여유가 필요하고, 공사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 공사범위의 불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시 공사범위의 확정이 어려워 착공 후의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음 - 단계별 시공의 적용시 공사관리업무가 증가됨 ● 발주준비의 복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턴키 방식은 사례 깊은 계획과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요함 - 발주준비를 하는데 있어 자체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전문 용역업체를 고용하여야 함
턴키사업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의 불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안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공사 범위가 모호함 - 착공 이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짐 ● 입찰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함으로써 입찰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부담이 증가함 ● 중소기업 참여 기회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개 대형 업체에 유리하며, 중소기업 및 신규 업체의 참여는 제한될 수 있음

3. 우리나라의 입찰제도별 수주추이 및 낙찰률의 비교

1) 우리나라의 입찰제도 요약

- 우리나라의 공공공사는 〈표 5〉와 같이 적격심사, 최저가낙찰제, 턴키입찰로 불리는 일괄·대안입찰 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정하고 있음
 - 정부는 2001년 1월부터 1천억이상 PQ대상 공사에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도를 2003년 12월 저가심의회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500억원 이상 PQ공사로 확대 시행한 바 있으며, 2006년 5월을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음
 - 최근 정부의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의 최저가낙찰제도의 확대는 일단 유보되어 있는 상황임

〈표 5〉 우리나라의 입·낙찰제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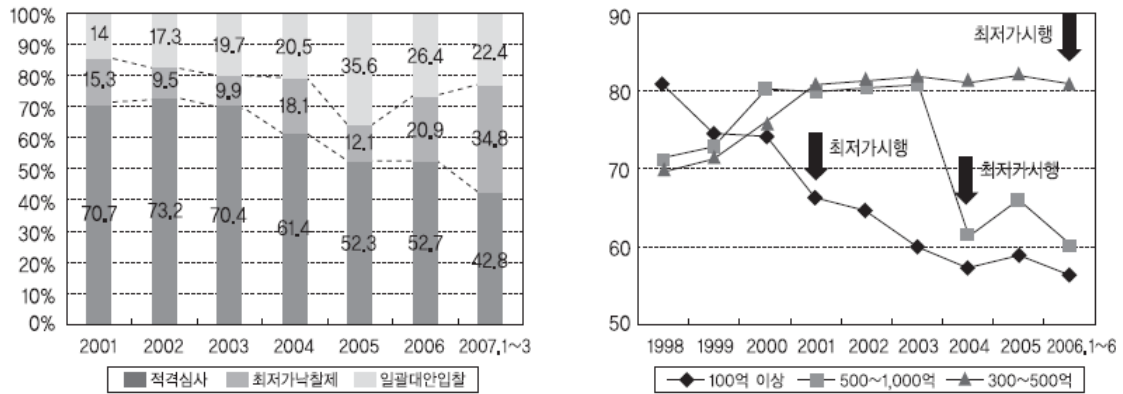
구분	300억 미만 공사 (적격심사 대상)	300억 이상 공사 (최저가낙찰제 대상)	대형공사 (일괄·대안입찰 공사)
낙찰자 선정 절차	- 적격심사를 통과한 최저가입찰자 - 입찰→적격심사	- 저가심사를 통과한 최저가입찰자 - PQ→입찰→저가심사	- PQ통과자 중 5가지 낙찰자결정방식에 따라 결정 - PQ→입찰→설계점수, 입찰가격 평가
심사 방법	- 최저가입찰자를 적격심사, 부적격시 차순위자를 순차적으로 심사	- 최저가입찰자를 저가심사 * 1단계: 저가공종판정 * 2단계: 저가종종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부적격시 차순위자를 순차적으로 심사	- 5가지 낙찰자결정방식에 따라 심사설계점수 상위 6개사를 심사
낙찰자 결정 기준	- 적격심사 결과 통과기준 * 100억원 이상: 92점 이상 * 100억원 미만: 95점 이상	- 저가심사 결과 통과기준 * 저가공종이 없는 경우: 1 단계에서 결정 * 저가공종이 있는 경우: 저가공종을 심사하여 모든 공종이 80점 이상이면 적격심사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 입찰가격조정방식 - 설계점수조정방식 - 가중치기준방식 -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일괄입찰의 경우에만 적용)

자료: 조달청, 2009, 공사발주 핸드북.

2) 입낙찰제도의 수주 추이 및 낙찰률의 변화

○ 다음의 〈그림 1〉에는 입낙찰제도의 유형별 수주 추이와 공사금액별 낙찰률의 추이를 나타내었음

〈그림 1〉 입낙찰제도 유형별 수주 추이(좌) 및 공사금액별 낙찰률 추이(우)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입찰제도 유형별 수주 추이는 다음과 같음

- 적격심사에 의한 수주는 2001년 70.7%였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상반기에는 42.8%까지 감소하였음
-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수주는 2003년 확대조치로 인하여 9%대에서 2004년에는 18.1%로 증가하였고, 이후 2006년 추가 확대조치로 2007년 상반기에 34.8%까지 증가되었음
- 일괄대안입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06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조치로 인하여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2007년 상반기 22.4%에 머무르고 있음

○ 공사금액별 낙찰률의 추이는 다음과 같음

- 100억 이상 500억 미만의 공사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에 따라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낙찰률이 하락하고 있음
- 300억 이상 500억 미만의 공사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와 무관하게 2001년 이후 80%정도의 낙찰률을 보임
- 500억 이상 1,000억 미만의 공사는 2003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조치로 인하여 2004년의 낙찰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최저가낙찰제의 도입 이후 낙찰률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2003년 12월 저가심의제(입찰가격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04년까지 낙찰률 감소추세가 이어져 2006년 5월 저가심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관적 심사제⁷⁾가 도입됨
- 주관적 심사제가 도입된 이후 낙찰률은 일정 수준 안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평균 낙찰률은 70%를 하회하고 있음(2007년 상반기 최저가공사 평균 낙찰률은 68.3%)
- 송민준(2008)은 최저가입찰제도는 예정가격 대비 예산 절감 효과와 계약의 투명성, 객관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PQ심사가 실제 시공능력을 변별하지 못하여 과도한 업체의 입찰참여가 저가투찰로 이어짐에 따라 시공의 질적수준 저하와 건설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다고 제시한 바 있음

7) 2003년 12월 도입된 저가심의제는 입찰업체의 입찰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아 일정 비율 이상의 편차가 발생하는 공종을 부적정 공종으로 하고, 그 부적정 공종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낙찰에서 배제하는 방식이었으나, 2006년 5월 기존방식을 1단계로 하고, 최저가 입찰자부터 공사비 절감사유 등을 심사하는 2단계 주관적 심사제를 도입하였음.

4. 우리나라 턴키 입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턴키 입찰제도의 문제점

- 건설교통부(2003)은 턴키 입찰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대형건설업체 6개사, 중견건설업체 15업체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바 있음
 - 면담결과, 턴키 입찰제도의 문제점은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찰방법 선정의 객관성 결여, 설계심의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 문제, 설계경쟁과는 무관한 요소에 의한 낙찰자 선정 등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턴키 입찰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표 5>에 요약하였음

<표 5> 우리나라 턴키 입찰제도의 문제점

구 분	내 용
입찰방법 선정의 객관성 결여	건설공사의 특성 및 공사비, 공기, 품질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입찰방법심의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정부의 방침에 비롯된 정책적 결정이나 건설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입찰방법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어 발생하는 문제임
기본설계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	턴키입찰방법의 핵심은 설계경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또는 건설업체의 로비 등에 의해 설계심의회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과다한 설계도서 작성으로 인한 입찰비용 부담 증가	기본설계를 통해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현행방식에서 설계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과도한 입찰비용이 소요되어 발생하는 문제임
대형업체중심의 과점현상의 심화	턴키공사 시장에서 대형건설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로서 이에 대해 대형건설업체는 기술력, 자본력, 브랜드가치 등이 중견업체보다 우수하므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반면, 중견업체에서는 기술력보다는 입찰에서의 로비 등 다른 요인 때문에 대형건설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주장함
낙찰률에 기준한 비효율성 시비	2002년 턴키공사 평균낙찰률은 90.9%로 최저가 적용대상공사의 평균낙찰률 63.9%, 적격심사적용 대상공사의 평균낙찰률 84.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러한 외형상의 낙찰률이 소수대형업체간의 담합으로 인해 발생되며 비효율적이라는 논쟁이 발생됨

*자료: 건설교통부, 2003, 대형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연구.

2) 우리나라 턴키 입찰제도의 개선방안

- 이상호(2006)는 위에서 기술한 턴키 입찰제도의 개선점을 단기 및 중장기적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는데 다음에 이를 요약하였음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턴키 입찰제도 심의의 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의 인력 풀(Pool)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발주하는 턴키 입찰을 심사하는 70여명의 평가단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가 발주하는 입찰을 심사하는 50여명의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함
 - 현행의 인력 풀 제도는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원 등 3000여 명 중 임의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임

가. 단기적 개선과제와 방안

- 턴키발주 관련 정책방향의 확립
 - 정부는 턴키발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건설업체로 하여금 경영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즉, 정부는 향후 턴키 발주를 축소할 것인지, 축소한다면 얼마나 축소할 것인지 또는 확대한다면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 현행 턴키 입찰제도는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중소건설업체는 수주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 초대형 턴키공사의 공구 분할 확대, 공사유형별 입찰방식의 다양화,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의 공동도급 활성화와 같은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음
-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과거보다는 설계심의 제도가 많이 개선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심의위원의 풀(pool)에 대한 시공업체의 로비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상설 설계심의기구를 신설하여 발주기관의 공무원과 소수의 엄선된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턴키 입찰 심의를 수행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설계심의제도 자체보다 입찰제도의 다양화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입낙찰제도의 다양화

-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한 단일의 획일적인 입낙찰제도, 일정낙찰률을 보장해주는 낙찰제도가 아니라,
- 공사특성과 발주기관의 여건을 감안한 다양한 입낙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나. 중장기적 개선과제와 방안

○ 기본시각의 재정립

- 턴키 입찰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게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상공사 선정기준의 재정비

- 해외시장 및 국내에서 진행된 턴키 입찰 공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턴키공사의 선정기준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발주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 외국의 경우 발주자가 턴키 입찰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 사례임
- 국내의 경우도 발주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브리징(Bridging)⁸⁾’ 방식의 턴키 입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예산 및 계약제도의 개편

- 턴키방식으로 입찰된 공사는 특히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필수적임
- 특히 턴키방식은 총액고정계약임을 감안하여 총공사비의 10%를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함

○ 지속적인 성과평가의 제도화

- 턴키방식으로 입찰된 공사는 미국 연방교통부 고속도로청(U.S.DOT FHWA)에서 수행하는 성과평가와 유사한 평가를 통해서 제도상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8) 브리징 방식은 발주자의 설계팀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설계기준을 개발하여 턴키사업자와의 의사소통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확정적인 가격제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턴키 입찰제도의 유형 중 하나임.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 2000, 제2차 건설기술 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 건설교통부, 2000, 턴키·대안입찰제도 업무요령.
- 건설교통부, 2003, 대형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성일, 1999, “우리나라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의 변화과정” 건설경제 통권 23권.
- 박준기, 2001, 신건설계약론.
- 송민준, 2008, 건설사 실적 추이와 관급공사, Korea Investors Service, 2008.11.10.
- 윤미정, 2002, 턴키공사 책임범위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호, 2006, 턴키·대안입찰제도 등 입찰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 조달청, 2009, 공사발주 핸드북.
- Greenfield, S. S., 1982, "Turnkey Construction in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Construction Division, ASCE, Vol. 108, No. 2, pp. 202.

[별첨1]

국토해양부 질의회답자료

1.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 2) 재벌회사에 대한 초과이윤 20, 30% 보장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평가
 - 3) 턴키입찰방식의 성과, 존재이유, 한국경제에 기여한 점 등
 - 4) 턴키입찰방식 폐지론 주장의 내용과 그 주체 및 국토부의 비판내용

(강창일 위원)

※작성자 : 기술기준과 시설사무관 조태희(TEL:02-2110-8386)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 재벌회사에 대한 초과이윤 20, 30% 보장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평가

○ 일괄공사의 낙찰율과 최저가 공사의 낙찰률을 단순히 비교할 때 높지만, 설계품질과 기술경쟁을 통해 수준 높은 시설물을 확보하는 제도취지를 고려하면 단순한 낙찰률 비교는 곤란

- 최저가 낙찰공사는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되나, 턴키공사는 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 턴키공사는 그동안 기술력경쟁 위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낙찰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07. 10월 다양한 낙찰자결정방식 도입으로 가격경쟁을 강화

*낙찰자 결정방식

설계적합·최저가, 설계점수/가격 조정, 가중치, 확정금액·최상설계 방식 등 5가지 방식 중에서 발주자가 선택

- 공사특성·목적 등에 따라 적정 낙찰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일괄·대안입찰 낙찰방식 가이드라인’ 작성·배포(‘08.6)

□ 턴키입찰방식의 성과, 존재이유, 한국경제에 기여한 점 등

○ 1996년에 설계기술력 제고 등 건설기술발전, 공공사업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턴키공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건설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 특히, 일괄·대안입찰공사는 기술을 중심으로 낙찰자가 선정되고 있어 입찰자는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입찰을 준비하게 되어 계획, 시공, 유지관리, 환경 등 품질측면에서 기존의 설계·시공분리입찰공사보다 우수한 입찰방식임.

○ 턴키공사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방식으로, 업체간의 기술경쟁을 통해 수준 높은 시설물을 확보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 공법, 미관, 형식, 품질 등 설계내용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고품격, 고품질의 시설물 건설

- 설계와 시공을 동일한 업체가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고 하자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

□ 턴키입찰방식 폐지론 주장에 대한 국토부의 비판내용

○ 턴키·대안입찰제도는 건설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선진국에서도 확대추세인 만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별첨2] 2004~2008 입찰방법별 현황

(금액단위:건수, 억원)

연도	입찰방법	건수	비중	예가	비중	낙찰가	비중	낙찰율
2004	수의	2,107	10.7%	1,526	0.3%	1,350	0.4%	88.4%
	적격	17,397	88.5%	258,243	58.0%	218,385	62.3%	84.6%
	최저가	87	0.4%	110,256	24.8%	64,217	18.3%	58.2%
	턴키대안	70	0.4%	74,900	16.8%	66,744	19.0%	89.1%
	총 합계	19,661	100.0%	444,925	100.0%	350,696	100.0%	78.8%
2005	수의계약	3,442	17.7%	2,508	0.6%	2,355	0.7%	93.9%
	적격	15,780	81.3%	228,034	54.4%	192,823	55.6%	84.6%
	최저가	50	0.3%	64,065	15.3%	38,601	11.1%	60.3%
	턴키대안	126	0.6%	124,295	29.7%	113,297	32.6%	91.2%
	총 합계	19,398	100.0%	418,901	100.0%	347,075	100.0%	82.9%
2006	수의	5,914	32.3%	4,178	1.1%	3,671	1.2%	87.9%
	적격	12,148	66.2%	165,669	43.5%	139,714	45.0%	84.3%
	최저가	152	0.8%	96,249	25.3%	63,596	20.5%	66.1%
	턴키대안	123	0.7%	114,862	30.2%	103,828	33.4%	90.4%
	총 합계	18,337	100.0%	380,959	100.0%	310,810	100.0%	81.6%
2007	수의	9,454	58.2%	13,960	3.3%	12,757	3.9%	91.4%
	적격	6,388	39.3%	82,625	19.8%	69,900	21.5%	84.6%
	최저가	287	1.8%	221,311	53.1%	151,810	46.6%	68.6%
	턴키대안	127	0.8%	98,885	23.7%	91,089	28.0%	92.1%
	총 합계	16,256	100.0%	416,782	100.0%	325,557	100.0%	78.1%
2008	수의	11,696	49.0%	30,042	5.5%	26,094	5.9%	86.9%
	적격	11,770	49.3%	149,714	27.3%	128,658	29.1%	85.9%
	최저가	284	1.2%	243,845	44.5%	175,375	39.6%	71.9%
	턴키대안	107	0.4%	123,850	22.6%	112,488	25.4%	90.8%
	총 합계	23,857	100.0%	547,451	100.0%	442,614	100.0%	80.8%

※자료: 대한건설협회

[별첨3] 2005~2008 공공 공사중 턴키대안공사 비중

<예정가격기준>

(금액단위:건수, 억원)

연도 입찰방법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비중	예가	비중	건수	비중	예가	비중	건수	비중	예가	비중	건수	비중	예가	비중
턴키대안	126	0.6%	124,295	29.7%	123	0.7%	114,862	30.2%	127	0.8%	98,885	23.7%	107	0.4%	123,850	22.6%
공공공사 총계	19,398	100.0%	418,901	100.0%	18,337	100.0%	380,959	100.0%	16,256	100.0%	416,782	100.0%	23,857	100.0%	547,451	100.0%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

요 약

■ 조사·분석 방향

- 정부가 마련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과 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하여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봄

■ 주요내용

- 조달청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11월 10일에 개최된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보고함
 - 동 계획 중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방안과 공공구매의 이행력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추진 실적을 점검함
- 공공구매 확대 방안으로는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직접구매) 확대,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우대,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사업수주 기회 확대,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역할 강화 등이 제시되었음
- 공공구매의 이행력 제고 방안으로는 공공구매지원관제도 도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실태조사 실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교육·홍보 강화, 수요자 중심의 중기간 경쟁입찰 심사 절차 개선, 구매실적 점검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및 통계 효율화 등이 제시되었음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매촉진법」)에 의무공공구매비율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공공구매 관련 조항을 확대하여 2009년 5월 제정된 「구매촉진법」에는 구매목표비율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동 법 제5조제1항 후단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증대를 위한 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증대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의안번호 5327)
 - 「구매촉진법」에 구매목표비율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구매목표비율을 명시해야 하는 구매계획 작성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공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임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친환경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친환경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친환경제품 의무구매를 규정하는 것은 친환경제품의 구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요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모든 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은 대부분 중소기업지원을 제도운영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의 하위법령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추진되는 제도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로 규정함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 2009년 5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매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 계약방식,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 공공구매지원정책과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지도·연수, 가업승계,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관련사항 등 다양한 정책이 혼재되어 있어 법률 체계가 복잡함
 - 따라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 제3장 “공공구매지원 확대 및 판로지원” 부분만을 따로 분리해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구매촉진법」 제정을 추진
 -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공공구매지원 담당자 지정제도 도입, 기술개발제품 원가계산비용 지원, 직접생산 확인에 따른 취소사유 명시, 중소기업 수출관련사항 등을 추가함
 - 현행 중소기업제품별 특성을 감안한 구매지원방안 등도 보완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동 법 제2조 제 2호에 규정되어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이러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은 9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음⁹⁾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구매촉진법」 제6조 내지 제8조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동 법 제5조¹⁰⁾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동 법 제3장(제13조 내지 제20조)

④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동 법 제12조

⑤ 직접생산확인제도: 동 법 제9조 내지 제11조

⑥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동 법 제7조

⑦ 규모별 경쟁제도: 동 법 제7조

⑧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운영: 동 법 제25조

⑨ 공공구매론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

□ 조달청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11월 10일에 개최된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 에서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 을 보고함

9) 각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기업청 발간자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를 참고(파일로 첨부)

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구매계획의 작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매촉진법」 제5조(구매계획의 작성)에는 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당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구매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임
-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원, △영세 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적정한 납품단가 반영, △공공구매의 이행력 제고 등 모두 5개 분야에 걸쳐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아래에서는 동 계획 중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방안과 공공구매의 이행력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추진 실적을 점검함

1)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가.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직접구매)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일정 규모 이상(일반공사 20억원, 전문공사 3억원) 공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공사용 자재는 공공기관이 직접구매(분리발주)하도록 제도화하였음
 - 분리발주 대상: 레미콘 등 142개 품목(중소기업청장 고시)
 - 분리발주 예외: 자재의 수요·공급 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접구매하지 않을 수 있음(「구매촉진법」 제9조제3항)
 - 2007년 분리발주 규모: 2,596억원
 - 37조887억원('07년 공공공사 발주규모) × 0.7% = 2,596억원
 - 0.7%: 조달청 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비율
- 일괄발주 시 자재납품 중소기업체가 하도급자로 전락하여 건설업체의 불합리한 대금결제조건, 저가하도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 제도 도입
-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품질, 관리상의 문제로 분리발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물론 분리발주 대상자재 중 상당 품목이 실제 공사와 분리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음

□ 개선방안

-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구체화
 - 삭제 또는 추가가 필요한 품목을 재정비(조달청, 중소기업청)
- 조달청 원가검토 시 분리발주 대상품목을 선별하여 해당 기관에 권고
 - 공공공사의 총사업비를 검토하거나 지자체 발주공사의 원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이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선별하여 분리발주를 확대하도록 권고
 - 공공공사 총사업비 검토 대상 : 토목공사 300억원(건축공사 100억원) 이상
 - 지자체 발주공사 원가검토 대상 :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 분리발주 대상품목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필요 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
- 권고내용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하여 분리발주 이행여부 점검 강화

□ 추진 현황

과제명(실천과제)	조치 필요사항	추진기관 (협조)	완료여부
① 분리발주 대상품목 재정비 및 분리발주 예외사유 구체화	중기간 경쟁제품 공고 개정 「구매촉진법」에 근거 마련 → 하위 고시 개정	중기청 (조달청)	법률안 공포 (09.11 시행)
② 조달청 권고 내용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하여 분리발주 이행여부 점검 강화	조달청 자체 운영	조달청 중기청	완료/ 추진중
③ 분리발주 대상품목 단가계약 체결 및 종합쇼핑몰 등록	조달청 자체 운영	조달청	완료

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우대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비싼 가격, 신뢰 부족, 감사·민원부담 등으로 우선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의 가격부담 완화
 - 단가계약된 물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공공기관 구매 촉진
 - 신재생에너지, 환경신기술, 고효율 에너지 인증제품 등을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에 추가
- 성능보험제도 확대
 - 기술개발제품 등에도 성능보험제도 도입
 -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책임자에게 면책을 부여
-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원가계산 실시(소요비용 일부 지원)
 -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적정가격 산출이 곤란하여 구매담당자가 구매를 기피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은 제값에 납품할 수 있음
- 종합쇼핑몰내 “기술개발제품 전용몰” 설치 운영
 -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인증기관과 종합쇼핑몰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격, 제품 사진 등의 정보제공
 - 조달청 영문 홈페이지에 영문 제품설명서, 사진, 가격 등을 게재하여 해외수출 지원
- 지자체 등에서 설치·운영 중인 계약심의회에 조달청 직원이 적극 참여하여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적정가격 심의 자문활동 강화
- 성능인증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
 - 예상 소요비용: 5억원(500건 × 1백만원)

□ 추진 현황

과제명(실천과제)	조치 필요사항	추진기관 (협조)	완료여부
① 조달우수제품 지정대상 물품 확대 및 종합쇼핑몰 등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고시) 개정	조달청 (지경부 등)	7월말 구축 완료 예정
② 기술개발제품 등에 성능보험제 확대	「구매촉진법」에 반영	중기청	법률안 공포 (09.11시행)
③ 기술개발제품이 제값에 구매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 실시(소요비용 일부 지원)	「구매촉진법」에 반영 기술료 활용 지원	중기청	추진중 (09.7점수예정)
④ 종합쇼핑몰내 “기술개발제품 전용몰” 설치 운영	자체 운영	조달청	7월말 구축 완료 예정
⑤ 성능인증 검사비용 일부 지원	「구매촉진법」에 반영 기술료 활용 지원	중기청	추진중 (09.7점수예정)

다.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사업수주 기회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 SW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억원 미만 SW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지정 운영
- 공공 SW사업에서 불필요한 일괄발주를 없애고, SW제품을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SW제품 분리발주제도 시행(1996년 12월)
 -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포함된 5천만원 이상의 SW제품
- 하지만, 기술력 우위, 행정편의 및 하자책임 등을 사유로 발주기관은 대기업을 통한 일괄발주를 선호
 - 중소SW기업은 하도급자로 참여하는 실정

□ 개선방안

- 정보화 시스템의 대형화·고도화, SW사업대가의 인상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전담사업 영역 확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의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하고, 분리발주 예외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시

□ 추진 현황

과제명(실천과제)	조치 필요사항	추진기관 (협조)	완료 여부
①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SW사업의 하한금액을 상향 조정(중소기업의 전담사업 영역확대)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개정	지경부 중기청 (조달청)	완료
②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의무사항으로 법제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재정부 지경부	완료

라.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역할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원 확보와 적기납품 및 품질보장을 위해 1물자 1업체 지정
 - 지정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다른 중소 우수기업의 신규참여 제한
- 현재 절충교역 수출인정 대상이 군수품으로 한정
 - 절충교역: 국외로부터 무기·장비 구매 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산무기·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로 인해 대기업 참여 증가 예상
 -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2008년 12월): 연구개발 촉진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소요기술·전용설비 등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부품별로 품목을 분류하고 각 해당품목을 개발할 업체를 미리 지정하는 제도

□ 개선방안

- 방산업체 지정 시 1물자 多업체 공급방식의 점진적 확대 적용
 - 현재 방산물자 1,420개 품목 중 기술 및 시설 등에서 경쟁에 의해서도 안정적 조달이 가능한 물자에 대해서는 복수업체 지정
- 절충교역의 대상제품을 확대
 - 절충교역대상 제품을 군수품에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제품 등 일반 중소기업 제품으로 확대
-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 이후 중소기업 보호방안 마련
 -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경쟁품목 지정
 -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 시 가점 부여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 추진 현황

과제명(실천과제)	조치 필요사항	추진기관(협조)	완료여부
① 방산업체 지정시 1물자·多업체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 규정 제정	방사청(중기청)	완료
② 절충교역의 대상 제품을 확대	「방위사업법」 개정	방사청(중기청)	완료
③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 이후 중소기업 보호방안 마련	중소기업간 경쟁제품(공고) 개정	방사청(중기청)	완료

2) 공공구매의 이행력 제고

가. 공공구매지원관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구매제도 미이행 사례에 대하여 사후 모니터링에 의존하여 권고 수준의 시정조치만 가능한 실정
 - 특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의 경우 포괄적인 예외인정으로 인해 기관별 자의적인 해석으로 제도 이행력 미흡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의 경우에도 동 규정이 임의규정이며,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등 우선구매 이행에 소극적
-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제도이행 감시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 개선방안

- 공공구매지원관제를 도입하여 사전·사후 관리감독 실시
 - 구매계획 및 실적관리, 계약 및 발주의 적정성 등을 사전검토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이행력 제고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미이행 등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공공구매지원관의 근거 및 역할(기능)을 법령에 명시하고, 우선 조달청과 중기청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되, 일부 구매력이 큰 공공기관은 자체인력을 공공구매지원관으로 지정하여 시범 추진

□ 추진 현황

과제명(실천과제)	조치 필요사항	추진기관(협조)	완료여부
공공구매지원관 제도 도입	「구매촉진법」에 근거 마련 (先시행·後제도보완)	중기청 (행안부)	완료

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실태조사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관의 중기간 경쟁입찰 미집행,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 후 대기업·수입 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하는 편법사례가 발생
 - 사후관리를 통하여 2008년 9월까지 10개 업체가 적발되어 직접생산 확인취소
- 미이행 사례 등에 대한 제도 이행력 제고 및 제도개선을 위해 면밀한 실태조사 필요
 - 과거 중기특위에서 공공구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동 기관이 폐지됨에 따라 조사내용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함

□ 개선방안

- 중기청에 “공공구매제도 위반신고센터” 를 설치하고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를 활용하여 신고내용 조사 및 조치
 - 지방중소기업청은 공공구매지원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요구 및 확인
 - 요구사항 미이행 및 고의·중과실의 경우 시정·개선 요구
 - 중소기업중앙회는 직접생산 확인기준 미충족 및 직접생산 미이행 사례 조사
 - 중기청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계약관련 주요기관의 협조를 통해 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등록
- 직접생산 미이행 업체에 대한 벌칙 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태조사내용 및 시스템을 정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

□ 추진 현황

과제명(실천과제)	조치 필요사항	추진기관(협조)	완료여부
①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 설치·운영	자체 운영	중기청	완료
② 직접생산 미이행 업체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구매촉진법」에 반영	중기청	법률안 공포 (09.11시행예정)
③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태조사	자체 운영	중기청, 조달청, 방사청	완료/ 추진중

다.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교육·홍보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시 적정가격 산정 곤란, 감사 및 민원제기의 부담 등이 구매기피의 주요 원인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해 감사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 분위기 조성 필요
- 새로운 공공구매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편견이 상존

□ 개선방안

- 구매담당자의 사기 진작 및 우대제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확대 분위기 활성화
 - 공공기관 우수 구매담당자에게는 포상확대(대통령·총리 표창 등) 및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2009년 20명으로 확대)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 제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 공무원 교육과정(행안부) 및 조달전문교육과정(조달청)에 공공구매제도 관련 교육을 상설 교육과정으로 개설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중소기업 등 연간 만여 명 대상 교육 실시

□ 추진 현황

과제명(실천과제)	조치 필요사항	추진기관(협조)	완료여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분위기 활성화	자체 운영	중기청, 행안부	완료/ 추진중
② 조달전문교육과정에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과정 신설	자체 운영	조달청	완료

라. 수요자 중심의 중기간 경쟁입찰 심사 절차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중소기업이 빈번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 9종을 D/B화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업체에게 별도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
- 직접생산 확인 시 근로자 고용확인을 위하여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가족형 기업은 미가입이 대부분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공장년수 증명이 필요하나, 공장을 이전한 경우 기존 소재지 시·군·구로부터 공장등록을 확인하는데 애로

□ 개선방안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서류제출을 생략토록 관련 규정 개선
- 직접생산 확인 시 가족형 기업의 생산인력 확인방법을 개선
 - 최근 3개월간 임금지급 자료를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증빙 서류로 대체
- 현행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공장이전 전후의 업체 이력을 D/B화하여 총괄적으로 관리

□ 추진 현황

과제명(실천과제)	조치 필요사항	추진기관(협조)	완료여부
① 종합정보망 구축 후 정보망을 통해 제출서류 생략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공고) 개정	중기청	완료
② 직접생산 확인 시 가족형 기업의 생산인력 확인방법 개선	직접생산 확인기준(고시) 개정	중기청	완료
③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을 개선하여 공장이전 업체 이력을 총괄적으로 관리	시스템 개편	지경부(중기청)	추진중

마. 구매실적 점검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및 통계 효율화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구매목표와

실적을 관리

- 실적관리 기관 수(개): (2007) 156 → (2008) 163 → (2012 목표) 488

○ 구매실적 파악은 공공구매정보망에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수기 입력하는 것에 의존

□ 개선방안

○ 실적점검 대상기관을 현행 163개 기관에서 488개 기관까지 단계별로 확대

- 1단계(2009년): 47개 준정부기관 추가(210개)

- 2단계(2011년): 지방공기업, 공사, 공단 101개 추가(313개)

- 3단계(2012년): 기타기관 181개 추가(488개)

○ 재정관리시스템 및 예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 자동 집계 추진(연간 1회→연간 2회로 확대)

□ 추진 현황

과제명(실천과제)	조치 필요사항	추진기관(협조)	완료여부
① 실적점검 대상기관을 단계별로 확대	제정법 시행령 반영 (先시행後제도보완)	중기청	완료
② 재정관리시스템 및 예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자동 집계 추진	자체 운영	중기청, 재정부, 행안부	완료

3.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 지금까지 살펴본 방안 이외에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으로는 「구매촉진법」에 의무공공구매비율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 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구매계획의 작성자)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4.10>

1.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의 장관

나. 국무총리실·법제처 및 국가보훈처의 장

다.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기상청·검찰청·병무청·경찰청·소방방재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해양경찰청·방위사업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장

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다음의 자

- 1) 서울메트로 사장
- 2)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
- 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 4)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5) 부산도시공사 사장
- 6)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 7)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 8) 경기도시공사 사장
- 9) 부산교통공사 사장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자

제11조 (구매계획과 계약실적 통보) ①제9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계약실적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內資)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하지만, 2009년 5월 제정된 「구매촉진법」에는 구매목표비율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동 법 제5조제1항 후단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증대를 위한 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증대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의안번호 5327)
-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총 구매금액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록 2008년에 급격히 축소되기는 했지만 법령에 규정된 50%를 상회하고 있음

<표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단위 : 조원, %)

구분	목 표			실 적		
	총구매	중소기업		총구매	중소기업	
			비율			비율
'05	81.7	56.0	68.5	83.2	56.9	68.4
'06	84.7	56.6	66.9	83.8	58.5	69.9
'07	97.1	63.7	65.6	92.0	63.0	68.4
'08	104.1	71.3	68.5	100.9	61.3	60.7
'09	104.8	63.4	60.5			

※자료: 중소기업청 제출 자료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구매촉진법」에 구매목표비율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명시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하한으로 규정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구매목표비율을 명시해야 하는 구매계획 작성기관 을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구매계획 작성기관은 2006년 121개 기관에서 2009년 210개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공공구매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매계획 작성기관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구매목표비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 구매계획 작성기관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구매계획 작성기관을 확대하려면 앞으로 마련될 「구매촉진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규정해야 함

〈표 2〉 구매계획 작성기관 및 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계 (09 : 210)
	국방부 등 39개	시·도 및 교육청 32개	한국조폐공 사 등 127개	서울메트 로 등 9개	한국은행 등 3개	
'05	20.1	21.8	11.5	1.0	2.5	56.9
'06	22.8	18.7	13.4	1.2	2.4	58.5
'07	24.8	15.7	19.2	1.2	2.0	63.0
'08	21.0	18.7	17.7	2.1	1.7	61.2
'09계획	21.1	20.1	19.0	2.8	0.2	63.4

※자료 : 중소기업청 제출 자료

- 다른 한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에 있어서의 공공기관별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50%로 설정되어 있는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매목표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일정 비율의 법정 기본목표는 유지하되, 공공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목표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방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제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
 - 즉, 법정 목표비율 5%를 달성하지 못하는 대상기관을 파악하고 그 사유를 파악하고 독려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중소기업의 친환경제품 구매 확대방안

- 현재 공공기관의 친환경제품 의무구매와 관련된 사항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동 법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에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친환경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 법에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친환경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 경우, 「구매촉진법」 상의 구매목표비율과의 관계가 문제시 될 수 있으나, 구매목표 비율은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과 공사까지 포함하고 있는 반면, 친환경제품 의무구매는 물품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양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중소기업 친환경제품의 의무구매를 규정하는 것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수 있음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 법의 입법목적은 중소기업의 제품의 구매촉진이나 판로지원이 아니라 친환경상품 구매의 촉진에 있음

〈참고문헌〉

중소기업청, 200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중소기업청 외, 200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

홍석일, 2008,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현황과 과제, 「KIET 산업경제」 8월호,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9. 8. 28.

발 의 자 : 강창일 · 양승조 · 김성순
김성곤 · 김우남 · 유성엽
이춘석 · 이시중 · 김영진
김재운 · 박선숙의원
(11인)

제안이유

이 법은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정부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력 강화와 판로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공공구매 관련 조항을 확대하여 2009년 5월에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수립시 구매목표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음.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할 수 있는 있는 조항이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당초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조사하여 적극적인 구매촉진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수립시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고시와 홍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비율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와 홍보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규정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의 구매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 나. 중소기업 기술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우선구매 대상 기술제품에 대한 고시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안 제14조 1항, 제2항 신설).
- 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작성” 을 “작성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지정” 을 “지정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시할 수 있다” 를 “고시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2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1]

2009년도 국토해양부관련 기관별 구매목표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50호)

1. 중소기업제품

□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전년 대비 증감율 (D-B)/B	
	총 구매 (A)	중소기업 (B)	비율 (B/A)	총 구매 (C)	중소기업 (D)	비율 (D/C)		
물품	국가기관	20,230,633	13,941,525	68.9	18,827,770	12,319,286	65.4	-11.6
	지방자치단체	7,136,099	4,340,564	60.8	6,076,166	4,208,863	69.3	-3.0
	공공기관	6,532,254	4,099,307	62.8	6,926,185	3,959,257	57.2	-3.4
	지방공사	297,491	209,661	70.5	519,764	402,031	77.3	91.8
	특별법인	3,904,607	1,614,170	41.3	4,850,771	1,954,290	40.3	21.1
	소 계	38,101,084	24,205,227	63.5	37,200,656	22,843,727	61.4	-5.6
	공사	국가기관	12,695,864	6,576,981	51.8	14,673,224	8,061,773	54.9
지방자치단체	16,912,229	12,280,439	72.6	18,818,345	14,854,572	78.9	21.0	
공공기관	20,522,331	10,581,846	51.6	25,146,229	11,383,508	45.3	7.6	
지방공사	3,618,476	1,571,095	43.4	4,473,372	2,201,356	49.2	40.1	
특별법인	72,906	23,249	31.9	45,150	35,543	78.7	52.9	
소 계	53,821,806	31,033,610	57.7	63,156,320	36,536,752	57.9	17.7	
용역	국가기관	1,132,009	520,278	46.0	1,319,244	834,465	63.3	60.4
	지방자치단체	2,916,500	2,121,897	72.8	2,694,332	1,959,499	72.7	-7.7
	공공기관	4,417,853	2,972,411	67.3	5,867,330	3,680,362	62.7	23.8
	지방공사	388,479	350,307	90.2	610,293	504,694	82.7	44.1
	특별법인	158,670	93,414	58.9	44,738	34,933	78.1	-62.6
	소 계	9,013,511	6,058,307	67.2	10,535,937	7,013,953	66.6	15.8
전체	국가기관	34,058,506	21,038,784	61.8	34,820,238	21,215,524	60.9	0.8
	지방자치단체	26,964,828	18,742,900	69.5	27,588,843	21,022,934	76.2	12.2
	공공기관	31,472,438	17,653,564	56.1	37,939,744	19,023,127	50.1	7.8
	지방공사	4,304,446	2,131,063	49.5	5,603,429	3,108,081	55.5	45.8
	특별법인	4,136,183	1,730,833	41.8	4,940,659	2,024,766	41.0	17.0
	합 계	100,936,401	61,297,144	60.7	110,892,913	66,394,432	59.9	8.3

※ 중앙·지자체의 조달청 의뢰분은 조달청 실적으로 집계

□ 세부 기관별 구매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실적			2009년목표			전년대비 증감율 (D-B)/B
	총구매 (A)	중소기업 (B)	비율 (B/A)	총구매 (C)	중소기업 (D)	비율 (D/C)	
국토해양부	2,903,529	1,833,753	63.2	2,140,054	1,588,478	74.2	-13.4
해양경찰청	531,044	477,187	89.9	230,000	207,002	90.0	-56.6
대한주택공사	8,008,614	4,333,819	54.1	10,663,379	5,977,840	56.1	37.9
대한주택보증(주)	4,597	3,342	72.7	3,860	2,759	71.5	-17.4
부산항만공사	8,665	6,663	76.9	2,740	2,520	92.0	-62.2
인천국제공항공사	831,796	318,219	38.3	375,384	113,479	30.2	-64.3
인천항만공사	56,687	53,849	95.0	126,759	46,556	36.7	-13.5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50,891	30,868	60.7	82,477	41,241	50.0	33.6
한국감정원	3,770	3,038	80.6	3,827	2,681	70.1	-11.8
한국공항공사	180,587	146,936	81.4	196,742	160,640	81.7	9.3
한국도로공사	1,960,499	813,256	41.5	2,307,764	800,609	34.7	-1.6
한국수자원공사	1,085,140	593,587	54.7	1,011,555	535,351	52.9	-9.8
한국철도공사	1,205,755	449,414	37.3	1,559,610	656,202	42.1	46.0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2,883	2,853	99.0	2,586	3,150	121.8	10.4
한국토지공사	1,565,135	751,992	48.0	2,261,659	742,271	32.8	-1.3
교통안전공단	50,110	26,816	53.5	52,400	27,249	52.0	1.6
한국철도시설공단	3,018,040	903,877	29.9	3,601,750	1,140,409	31.7	26.2
대한지적공사	-	-	-	14,000	12,700	90.7	-
선박안전기술공단	-	-	-	246	133	54.1	-
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	-	-	-	143	136	95.1	-
한국시설안전공단	-	-	-	3,936	2,025	51.4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4,143	3,120	75.3	-

2. 기술개발제품

□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실적			2009년목표			전년대비 증감율 (D-B)/B	
	중기물품 (A)	기술개발 제품(B)	비율 (B/A)	중기물품 (C)	기술개발 제품(D)	비율 (D/C)		
전 체	국가기관	13,941,525	1,034,972	7.4	12,319,286	1,365,290	11.1	31.9
	지방자치단체	4,340,564	231,332	5.3	4,208,863	311,776	7.4	34.8
	공공기관	4,099,307	400,146	9.8	3,959,257	282,814	7.1	-29.3
	지방공사	209,661	6,534	3.1	402,031	12,447	3.1	90.5
	특별법인	1,614,170	7,864	0.5	1,954,290	4,701	0.2	-40.2
	합계	24,205,227	1,680,848	6.9	22,843,727	1,977,028	8.7	17.6

※ 조달청 의뢰분은 조달청 실적으로 집계

□ 세부 기관별 구매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실적			2009년목표			전년대비 증감율 (D-B)/B
	중기물 품(A)	기술개발 제품(B)	비율(B/A)	중기물 품(C)	기술개발 제품(D)	비율(D/C)	
국토해양부	1,433,950	19,934	1.4	79,640	2,785	3.5	-86.0
해양경찰청	472,585	2,857	0.6	178,200	8,911	5.0	211.9
대한주택공사	174,898	6,288	3.6	228,830	7,807	3.4	24.2
대한주택보증(주)	554	15	2.7	499	5	1.0	-66.7
부산항만공사	6,596	173	2.6	1,844	106	5.7	-38.7
인천국제공항공사	28,214	510	1.8	15,229	271	1.8	-46.9
인천항만공사	1,230	129	10.5	1,180	50	4.2	-61.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683	158	9.4	205	11	5.4	-93.0
한국감정원	1,411	69	4.9	719	20	2.8	-71.0
한국공항공사	19,032	1,422	7.5	24,017	1,352	5.6	-4.9
한국도로공사	126,379	15,389	12.2	93,933	4,697	5.0	-69.5
한국수자원공사	128,439	36,670	28.6	114,091	21,611	18.9	-41.1
한국철도공사	273,072	14,248	5.2	312,486	12,200	3.9	-14.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621	98	15.8	654	57	8.7	-41.8
한국토지공사	60,950	29,752	48.8	92,661	44,229	47.7	48.7
교통안전공단	9,812	100	1.0	9,499	200	2.1	100.0
한국철도시설공단	71,814	1,062	1.5	122,032	1,100	0.9	3.6
대한지적공사	-	-	-	10,500	30	0.3	-
도로교통공단	-	-	-	6,468	467	7.2	-
선박안전기술공단	-	-	-	133	5	3.8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	-	123	8	6.5	-
한국시설안전공단	-	-	-	754	3	0.4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2,168	109	5.0	-

3. 여성기업제품

□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전년대비 증감율 (D-B)/B	
	총구매 (A)	여성기업 (B)	비율 (B/A)	총구매 (C)	여성기업 (D)	비율 (D/C)		
전체	국가기관	34,058,506	1,361,508	4.0	34,820,238	1,466,318	4.2	7.7
	지방자치단체	26,964,828	628,814	2.3	27,588,843	808,905	2.9	28.6
	공공기관	31,472,438	710,938	2.3	37,939,744	613,123	1.6	-13.8
	지방공사	4,304,446	89,665	2.1	5,603,429	60,363	1.1	-32.7
	특별법인	4,136,183	27,291	0.7	4,940,659	17,519	0.4	-35.8
	합계	100,936,401	2,818,216	2.8	110,892,913	2,966,228	2.7	5.3

※중앙·지자체의 조달청 의뢰분은 조달청 실적으로 집계

□ 세부 기관별 구매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실적			2009년목표			전년대비 증감율 (D-B)/B
	총구매 (A)	여성기업 (B)	비율 (B/A)	총구매 (C)	여성기업 (D)	비율 (D/C)	
국토해양부	2,903,529	50,976	1.8	2,140,054	40,734	1.9	-20.1
해양경찰청	531,044	946	0.2	230,000	890	0.4	-5.9
대한주택공사	8,008,614	53,981	0.7	10,663,379	70,015	0.7	29.7
대한주택보증(주)	4,597	83	1.8	3,860	12	0.3	-85.5
부산항만공사	8,665	395	4.6	2,740	105	3.8	-73.4
인천국제공항공사	831,796	1,980	0.2	375,384	3,943	1.1	99.1
인천항만공사	56,687	120	0.2	126,759	23	0.0	-80.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0,891	62	0.1	82,477	100	0.1	61.3
한국감정원	3,770	184	4.9	3,827	35	0.9	-81.0
한국공항공사	180,587	23,418	13.0	196,742	12,056	6.1	-48.5
한국도로공사	1,960,499	51,069	2.6	2,307,764	26,608	1.2	-47.9
한국수자원공사	1,085,140	28,534	2.6	1,011,555	27,685	2.7	-3.0
한국철도공사	1,205,755	42,050	3.6	1,559,610	40,000	2.6	-4.9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883	4	0.1	2,586	7	0.3	75.0
한국토지공사	1,565,135	12,926	0.8	2,261,659	10,760	0.5	-16.8
교통안전공단	50,110	1,053	2.1	52,400	1,573	3.0	49.4
한국철도시설공단	3,018,040	14,834	0.5	3,601,750	18,369	0.5	23.8
대한지적공사	-	-	-	14,000	200	1.4	-
도로교통공단	-	-	-	14,521	515	3.5	-
선박안전기술공단	-	-	-	246	17	6.9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	-	143	6	4.2	-
한국시설안전공단	-	-	-	3,936	139	3.5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4,143	32	0.8	-

4. 장애인기업제품

□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년목표		
		총구매(A)	장애인기업(B)	비율(B/A)
전체	국가기관	34,820,238	97,393	0.28
	지방자치단체	27,588,843	181,865	0.66
	공공기관	37,939,744	30,971	0.08
	지방공사	5,603,429	2,850	0.05
	특별법인	4,940,659	2,742	0.06
	합계	110,892,913	315,821	0.28

※중앙·지자체의 조달청 의뢰분은 조달청 실적으로 집계

□ 세부 기관별 구매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년목표		
	총구매(A)	장애인기업(B)	비율(B/A)
국토해양부	2,140,054	918	0.0
해양경찰청	230,000	1,779	0.8
대한주택공사	10,663,379	7,146	0.1
대한주택보증(주)	3,860	7	0.2
부산항만공사	2,740	55	2.0
인천국제공항공사	375,384	46	0.0
인천항만공사	126,759	22	0.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82,477	22	0.0
한국감정원	3,827	15	0.4
한국공항공사	196,742	19	0.0
한국도로공사	2,307,764	1,003	0.0
한국수자원공사	1,011,555	1,900	0.2
한국철도공사	1,559,610	1,000	0.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586	5	0.2
한국토지공사	2,261,659	240	0.0
교통안전공단	52,400	524	1.0
한국철도시설공단	3,601,750	2,489	0.1
대한지적공사	14,000	28	0.2
도로교통공단	14,521	382	2.6
선박안전기술공단	246	13	5.3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43	8	5.6
한국시설안전공단	3,936	7	0.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143	24	0.6

5. 예산조기집행 비율

□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상반기조기집행		
		총구매(A)	상반기계획(B)	비율(B/A)
전체	국가기관	34,820,238	24,661,362	70.8
	지방자치단체	27,588,843	19,531,073	70.8
	공공기관	37,939,744	24,114,960	63.6
	지방공사	5,603,429	3,790,854	67.7
	특별법인	4,940,659	2,836,694	57.4
	합계	110,892,913	74,934,943	67.6

※ 중앙·지자체의 조달청 의뢰분은 조달청 실적으로 집계

□ 세부 기관별 구매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상반기조기집행		
	총구매(A)	상반기계획(B)	비율(B/A)
국토해양부	2,140,054	1,519,495	71.0
해양경찰청	230,000	126,500	65.1
대한주택공사	10,663,379	5,666,469	53.1
대한주택보증(주)	3,860	2,527	65.5
부산항만공사	2,740	2,014	73.5
인천국제공항공사	375,384	199,072	53.0
인천항만공사	126,759	93,281	73.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82,477	61,245	74.3
한국감정원	3,827	2,741	71.6
한국공항공사	196,742	131,355	66.8
한국도로공사	2,307,764	1,676,442	72.6
한국수자원공사	1,011,555	691,560	68.4
한국철도공사	1,559,610	1,092,626	70.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586	2,578	99.7
한국토지공사	2,261,659	1,357,715	60.0
교통안전공단	52,400	36,980	70.6
한국철도시설공단	3,601,750	2,713,526	75.3
대한지적공사	14,000	9,300	66.4
도로교통공단	14,521	12,870	88.6
선박안전기술공단	246	202	82.1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43	61	42.7
한국시설안전공단	3,936	3,224	81.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143	2,478	59.8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

국회의원 강창일